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KOREAN AMATEUR RADIO LEAGUE, 약칭 KARL, 이하 연맹)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연맹은 정당한 아마추어무선통신과 실험을 장려 지도하고,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 향상과 이의 보급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해발생 시에 통신지원과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을 하며 무선국을 통한 사회봉사와 회원 권익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연맹은 본부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84에 둔다.

제 4 조 (지역본부) ① 본 연맹은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별로 (이하 “지역본부구역”) 지역본부를 두며 15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본부의 조직운영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사 업

제 5 조 (사 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

- ① 회지(KARL) 및 무선통신에 관한 출판물 간행
- ② 교신증, 수신증의 중계 전송
- ③ 무선통신에 관한 실습회, 경연회, 강습회, 견학회, 연구발표회 개최 및 상장(AWARD) 발행
- ④ 국제아마추어무선연합 (THE INTERNATIONAL AMATEUR RADIO UNION, IARU) 및 제외국 아마추어무선 단체와의 제휴
- ⑤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 ⑥ 기타 연맹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종류) 연맹 회원은 소정의 입회 수속을 마친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정 회원 :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 ② 가족회원 : 정회원과 동거하는 개인으로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형제 자매.
- ③ 단체회원 :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를 가지고 있는 단체.
- ④ 준회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래 아마추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2. 외국의 주관청으로부터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3.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진 자
 4. 단체 아마추어국의 구성원으로 개인의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 ⑤ 특별회원 : 연맹의 취지에 찬동하고 연맹의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사회의 저명인사 및 아마추어무선 발전에 공헌이 지대 한자로서 이사회의 추천 후 의결을 거친 자.
- ⑥ 휴면회원 : 정회원으로서 아마추어무선국 허가를 상실한 자. 단, 재개국 하여 무선국 허가를 받은 자는 다시 서면으로 신청하여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정수) 정회원, 가족정회원, 단체정회원의 수를 모두 합한 수를 정수로 한다.

제 8 조 (입회 및 회비) ① 연맹 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② 가입은 이사회에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③ 가입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단 재해로 피해 받은 회원과 장애우에 관한 회비의 감면 조치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④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의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
- ⑤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9 조 (임의탈퇴) 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법정탈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자연히 탈퇴된다.

- ① 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의 상실
- ② 사망 또는 해산
- ③ 제명

제 11 조 (상 별) ①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및 우수 아마추어국 운용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②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관계 전파법규를 위반하여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 후 징계한다.

제 12 조 (재가입) ① 연맹을 탈퇴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소속 지역본부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 13 조 (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가족정회원 제외)은 연맹에서 발행되는 KARL지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방법으로 교신증 또는 수신증을 받을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연맹 홈페이지를 이용 할 수 있다.
- ④ 정회원은 본 연맹이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 4 장 대 의 원

제 14 조 (대의원) 대의원은 각 지역 본부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지역 본부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수는 회원이 선출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수로 한다. 당연직 대의원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지역본부장 및 전직 이사장 등이 포함된다. 단 전직이사장은 희망자에 한하여 포함한다.

제 15 조 (대의원의 자격)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① 준회원
- ② 특별회원
- ③ 회비 면제 대상자 (단, 장애인은 제외)
- ④ 정회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16 조 (대의원의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에 부의된 제반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 제 17 조 (대의원수 배정)** ①대의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100명 이내로 한다.
 ②매년 12월말에 각 지역본부별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이를 백분율로 나누어 대의원 수를 배정하고, 다음해 1월중에 이사회회의 인준을 받아 각 지역본부에 통보한다. 단 백분율 계산 시 정수만 인정한다.
 ③ 12월말 포함 3개월 이전까지 업무보고가 안된 지역본부에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대의원 선출) 매년 3월말까지 각 지역본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 개선이 있는 해에는 개선된 임원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19 조 (명단보고) 지역본부장은 대의원의 명단을 성명, 호출부호, 회비 납부 사항, 회원 가입 일자 및 현주소 등을 명기하여 무선국 허가장 사본과 함께 총회 개최 20일전까지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피선통보) 지역본부장은 피선된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1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 5 장 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

- 제 22 조 (명예이사장)** ① 연맹에는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은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중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그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

- 제 23 조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이사)** ① 연맹에는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전직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외의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고문, 자문위원은 연맹의 자문 요청에 응하며, 명예이사는 연맹에서 추구하는 사업에 동참한다.

제 6 장 임원 및 감사

- 제 24 조 (임원의 종류 및 감사의 정수)** ① 연맹에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3명, 이사 10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은 부이사장 1명, 이사 2명을 러닝메이트로 한다.

- 제 25 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는 현 집행부의 후반기 임기와 차기 집행부 전반부 임기가 겹치도록 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시에는 임시총회 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완료 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전임자가 계속 직무한다.
 ④ 임원은 입후보시 계속해서 모두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⑤ 임원은 연맹 또는 본부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한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 입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인 부이사장과 이사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특정분야 담당 3명의 이사도 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⑥ 이사장은 지역본부(지부포함)의 운영에 관계되는 직무를 병행 할 수 없다.

제 26 조 (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제 28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임원은 임기 중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 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이사장 중에서도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 (보궐선거) ①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보궐선거도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31 조 (감 사)

①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연맹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겸임 금지

감사는 이사 또는 지역본부(지부 포함)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7 장 총 회

제 32 조 (총 회) ① 연맹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선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대의원 선출규정에 의한다.

제 3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① 정관 개정 : 총회 개최 90일전에 각 지역본부로부터 정관 개정(안)을 접수, 정관개정위원이 검토 후 이사회 심의를 거친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이 임면 할 임원을 제외한 제24조 제1항의 임원선출.

④ 기타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제 34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넷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또는 재적대의원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요구하였을 때 10일 이전에 공고한 후 소집한다.

- 제 35 조 (총회의 의장)**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 제 36 조 (총회의 의결과 회의록)**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의장과 각 본부 출석 대의원 5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장 이 사 회

제 37 조 (이사회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 38 조 (이사회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 ① 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④ 정관 및 제 규정과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⑤ 제 규정 및 규칙을 개·폐·제정하는 사항
- ⑥ 비품폐기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9 조 (이사회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사회회 의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 41 조 (이사회회 의결과 회의록) ① 이사회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이사회회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전자 서명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타조직

제 42 조 (사무총국) ① 연맹에는 연맹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및 소요 직원을 두며 사무총국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43 조 (위원회) ① 연맹은 전문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회를 보좌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10 장 재 정

제 44 조 (수입) ① 연맹의 수입은 회원의 제회비, 찬조금, 기부금, 연맹 사업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연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

제 45 조 (예산 및 결산) 연맹의 예산안 및 결산은 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6 조 (자산의 유지관리와 처분 및 운용)

① 지역본부 통합시 그 자산은 통합 지역본부에 귀속되며, 해산 시에는 연맹의 자산으로 관리 한다. 그 운영 및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② 연맹 자산의 유지관리와 처분 및 운용은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③ 연맹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이 정관에 따른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④ 연맹이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47 조 (회계연도) 연맹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고, 제 38조 5항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 ① 이 정관은 민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규정의 효력의 불소급) 제4조 1항의 지역본부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정관 제4조 1항의 개정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2018. 2. 28. 현재)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건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84 (마평동)	780,8㎡	591,398,757원		지상3층 지하1층
토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84 (마평동)	980㎡	1,240,583,579원		
합계			1,831,982,336원		